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6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박지혜・이재강・이건태

이소영 • 이용우 • 정성호

위성곤 · 김성환 · 허 영
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,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한편,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,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,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 아왔으며, 산업·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

록 하고자 함(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생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			
대상에서 제외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1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		
	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		
	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		
	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		
	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		
	에서 실시하는 사업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